特別企劃시리즈

아시아地域工業所有權制度

○…… 이 글은 지난 83年 世界知的所有權機構(WIPO)에서 아시아地域 각국 ……○
○…… 特許廳을 통하여 調査, 發刊한 「THE SITUATION OF INDUSTRIAL ……○
○…… PROPERTY IN THE COUNTRIES OF ASIA AND THE PACIFIC」를 ……○
○…… 基本資料로 하여 作成한 것이다. ……○

◎ 第 3 回 ◎

◉ 싱가포르(1) ◉

▩ 工業所有權 ▩

1. 法 令

(a) 現行國內法

(i) 發 明

英國 特許登錄令, 181條, 1937年(1955年修正)

英國 特許登錄施行令, 1937年 (5月 28日, No. 42)(1966年 修正)

特許(强制實施權許與 包含)條例, 196條, 1968年 No. 12)

(ii) 意 匠

英國 意匠(保護)令, No. 17, 187條, 1938年 (1955年 修正)

(iii) 標 章

商標條例, 206條, 1939年(1975年 修正)

商標規則, 1938年, No. 209.

싱가포르 標準 및 工業硏究(證明標章) 制度規定, 1974年

(iv) 다른 工業所有權

特別한 規定이 없다.

(v) 消費者 保護

消費者 保護(去來明細 및 安全要件) 條例, 1975年(1975年 No. 18)

(vi) 現行法令의 改正

政府는 새로운 特許法의 制定을 면밀히 검토하고 있다.

(b) 條約加入 : 無

(c) 特許에 關한 主要 規定 및 其他 發明保護名稱

(i) 賦與된 名稱

登錄證明(布告令, 第3條 및 5條)

(ii) 保護基準

特別한 規定은 없지만, 英國에서의 特許日 보다 앞서서 싱가포르에서 그 發明의 製作, 使用 또는 販賣는 싱가포르에서 特許를 위해 發行된 登錄證의 無效 根據가 된다(布告令, 第9條).

(iii) 保護받을 수 없는 特定物質

規定이 없다.

(iv) 海外에서 取得한 名稱 및 出願의 效果

싱가포르에서의 相應하는 發明의 保護를 위해서는 英國에서의 特許獲得이 必要하다. 英國에서 特許를 받은 者가 싱가포르에서 特許登錄을 받기 위해서 特許證發給日로 부터 3年以內에 申請할 수 있다(布告令, 第3條).

또한 英國이 加入한 유럽特許條約에 根據하여 取得한 特許도 싱가포르에서 登錄될 수 있다(內規, No. 1/82(特許登錄官), 1982年 9月 22日)

(v) 開示의 範圍

特別한 規定은 없지만 英國特許의 登錄申請은 圖面을 包含한 明細書 寫本을 添附해야 한다(布告令, 第4條).

(vi) 特許節次 : 公告

特許는 形式審査만 한 後에 登錄官은 登錄證을 發行하고 特許登錄簿에 必要한 情報를 記入한다.

(施行令, 第5條 및 13條). 登錄證의 發給은 官報에 揭載된다(施行令, 規則 6).

(vii) 獨占權의 範圍

登錄證에 의해 賦與되는 權利나 特權은 英國에서의 特許證發行에 의하여 賦與되는 것들과 모든 점에서 類似하다(布告令, 第6條).

登錄證에 의해 賦與된 權利는 政府에 의한 政府病院用 醫藥品의 製造, 輸入, 獲得에 의해 侵害받지 않는다.(强制實施權許與條例 第13條)

外國船舶이 一時的으로 또는 우연히 그 나라의 領海內로 들어왔을 경우, 그 發明이 그 容器의 實際의 必要性으로 制限的으로 使用된다면 그 特許된 發明의 使用은 그 特許의 侵害가 아니다. 또한 外國 항공기나 陸上車輛의 構成이나 操作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布告令 第8條).

(viii) 存續期間 및 維持

存續期間

登錄된 特許는 그에 相應하는 英國에서의 特許가 施行되는 限 계속 效力을 發生한다(布告令, 第7(1)條).

維　持

規定은 없고 앞 節의 存續期間에 준한다.

(ix) 實施義務 : 非自發的 實施權 許與

實施義務

特許廳長은 싱가포르內에서 商業的으로 實施可能하거나 實施되는 것이 公衆의 利益에 필요한 特許發明이 不當한 遲延없이 最大限의 範圍內에서 實施되도록 하기 위하여 强制實施權을 賦與할 수 있다(强制實施權許與條例, 第4(1)(a)條).

非自發的 實施權 許與

特許證 發給日로부터 3年이 滿了된 후 모든 利害關係者(임의의 實施權의 所有者 包含)는 何時라도 다음의 理由中 1개 또는 몇개를 들어 特許廳長에게 그 特許에 根據한 强制實施權 許與를 申請할 수 있다. 但, 이 規定은 金屬板, 金屬, 튜우브, 鐵線, 유리, 미네랄, 울, 스래그 울 및 織物, 製紙, 셀루로우스의 생산에 관한 分野 그리고 固定 構造物에 關한 分野에만 適用된다.

▲싱가포르 內에서 商業的으로 實施可能한 特許發明이 싱가포르 內에서 商業的으로 實施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充分한 程度로 實施되지 못하고 있을 때

▲싱가포르內에서 特許物品의 需要가 妥當한 條件에 의하여 充當되지 못하고 있거나 또는 相當한 量이 輸入에 의해 充當되고 있을 때

▲싱가포르內에서 發明의 商業的 實施가 特許物品의 輸入에 의하여 妨害받고 있을 때

▲特許權者가 妥當한 條件의 한 개 또는 몇 개의 實施權 許與를 拒絶하기 때문에

▲싱가포르 內에서 製造된 特許物品의 輸出市場이 提供되고 있지 않을 때

▲技術的으로 充分한 寄與를 하는 다른 特許發明의 實施 또는 效果的인 實施가 싱가포르 內에서 妨害받고 있거나

▲싱가포르內에서 商業的 또는 産業的 活動의 設立 또는 開發이 不當하게 沮害되고 있을 때

▲特許에 根據한 實施權의 許與 또는 特許物品이나 方法의 購買, 賃借 또는 使用의 댓가로 特許權者에 의하여 과해지는 條件으로 인하여 特許에 의하여 保護받지 못하는 材料의 製造, 使用 및 販賣

▲싱가포르 內에서의 商業的, 産業的 活動의 設立 또는 開發이 不當하게 沮害되고 있을 때 (强制實施權許與條例, 第3條)

▲特許廳長은 英國에서의 特許證 發給日 後 何時라도 그 特許가 食品 또는 醫藥品, 또는 그것의 生産 및 生産方法, 또는 外科用 혹은 治療用 裝置의 一部로서 使用될 수 있는 物質에 關한 것으로 그러한 特許가 싱가포르에 登錄되어 있을 때 利害當事者(임의의 實施權 所有者包含)의 申請에 따라 適當한 條件으로 그 特許의 實施權의 許與를 命할 수 있다.

그러나 特許權者가 싱가포르內에 이미 그 特許와 關聯된 食品, 醫藥品 및 外科用 혹은 治療用裝置의 製造를 위한 産業을 設立했거나 또는

가까운 장래에 그리하리라는 것을 特許廳長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하면 特許廳長은 그러한 實施權의 許與를 命하지 않을 수 있다(强制實施權許與條例, 第5條).

▲强制實施權許與의 申請이 있었을 경우 그 特許에 의해 保護되지 않는 材料의 製造, 使用 및 販賣가 그 特許에 根據한 實施權 許與, 特許物品이나 方法의 購買, 賃借 및 使用에 關한 댓가로 特許權者에 의하여 과해지는 條件으로 인하여 不當하게 沮害되었다고 認定되는 경우에 特許廳長은 申請人은 물론 妥當하다고 생각되는 그 申請人의 顧客에게도 그 特許에 根據한 實施許與를 命할 수 있다(强制實施權 許與條例, 第6(1)條).

▲特許廳長은 特許權者로부터 그 發明에 關한 製作·使用·實施 및 販賣의 權利와 그 特許에 根據한 實施權許與 權利를 剝奪할 수 있는 直接的인 强制實施權許與를 命할 수 있다. 그리고 그 發明에 따른 現存하는 모든 實施權을 取消하기 위하여도 그러하다(强制實施權條例, 第6(3)條).

政府에 의한 實施

어떤 特許된 醫藥品이라도 政府가 配布를 위하여 製造·輸入 및 取得을 할수 있다. 또한 政府에 의해서나 政府를 위하여 維持되거나 또는 特許廳長이 指定하는 藥局·病院 및 其他 醫療機關에서 사용될 수 있다.

앞서 말한 目的을 위한 特許발은 醫藥品은 製造·輸入 및 取得등의 前이나 後에 政府와 特許權者 사이의 合意한 條件으로 製造·輸入 및 取得될 수 있다. 合意가 없을 때는 特許權者를 考慮하여 特許廳長이 決定할 수 있다(强制實施權許與條例, 第13(1) 및 (4)條).

取　消

强制實施權이 許與되었을 때, 그 特許가 實施되지 않거나, 不充分하게 實施되거나 또는 不適當하게 使用되는 경우에는 許與로부터 2年이 經過한 後 어느 때나, 利害關係人은 누구든지 特許廳長에게 强制實施權 許與를 위해 提供된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그 特許의 取消를 申請할 수 있다.

(x) 讓渡 및 實施權 許與

登錄證에 의한 權利에 관하여 法의 施行에 의해서 讓渡 또는 移轉하는 모든 경우에는 特許登錄 原簿에 記錄해야 한다(布告令, 11).

(xi) 職務發明: 特別한 規定이 없다. 〈K〉

<계속>

案 月刊「發明特許」 稿募集 內

本誌는 讀者여러분과 함께 만드는 工業所有權 專門誌입니다. 本誌는 製作에 讀者여러분의 幅넓은 參與를 기다리고 있읍니다.

工業所有權에 관한 內容이면 무엇이든 歡迎합니다. 많은 投稿바랍니다.

- ⦿ **論　文**: 200字 原稿紙 20~50枚 (번역문포함)
- ⦿ **우리社의 特許管理**: 15~30枚 내외
- ⦿ **發明成功事例(職務發明 우대)**: 30枚 내외(추후 단행본으로도 製作됨)
- ⦿ **나의 提言**: 10枚 내외 (工業所有權法 改善사항에 한함)
- ⦿ **工業所有權 수필**: 10枚 내외 (外國視察記포함)
- ⦿ **기타**(社內消息·新製品 紹介·만화등)
- ⦿ **接受期限**: 수시접수
- ⦿ **接受處**: **韓國發明特許協會 調査部「月刊 發明特許」編輯室**